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3. 이훈기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 7.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2024. 8.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8. 23.)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법상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제한된 범위의 경로당 지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고령화로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부식구입비에 사용이 가능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